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**560** 2019년 4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3월 29일 이영실의원 외 10명 발의

2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
3. 상정일자 :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9년 4월 22일 상정· 의결(원안 가결)】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이영실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 방지.

2. 주요내용

○ '장애등급'을 '장애정도'로 용어를 정비함(안 제6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.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취지

○ 개정안은 '17.12.19. 「장애인복지법」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조례간의 상충 방지를 위하여 제안되었음.

장애등급제 폐지 개요 (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 '17.12.19.개정,/시행 '19.7.1.)

- 용어정리
 - '장애등급'→'장애정도'
 - 장애'1~3급'→'심한장애'. 장애'4~6급'→'심하지 않은 장애'. 장애'1~6급'→'등록장애인'
-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
 - '장애등급별 차등 지원'→'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'에 따라 지원

2 주요사항 검토

가. 개정안의 내용

○ 조례상 '장애등급'이라는 용어를 '장애정도'로 개정함(안 제6조제2항).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전수조사) ①(생략)	제6조(전수조사) ①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할 때 필	②
요한 경우 연령, <u>장애등급</u> 등을 기준	장애정도
으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	
③(생략)	③(현행과 같음)

3 종합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(장애인복지법)의 개정사항(장애 등급제 폐지)을
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용어를 개정(장애 등급→장애 정도)하는 것으로
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으로써 체계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
개정안인바,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「생략」

V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11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】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: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560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:이영실, 김혜런, 이병도,

오현정, 김동식, 김용연,

봉양순, 서윤기, 이정인,

김화숙, 김소양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○ 장애등급제 페지 시행과 관련하여 「장애인복지법」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조례 내에 있는 '장애등급'을 '장애 정도'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 방지(안 제6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의 본문 중 "장애등급"을 "장애 정도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6조(전수조사) ①(생략)	제6조(전수조사)①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할 때 필요	②
한 경우 연령, <u>장애등급</u> 등을 기준으로	강애 정도
조사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	<u>.</u>
③(생략)	③(현행과 같음)